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엔해양총회등의 정의를 실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수정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원 조직인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성격과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 대상을 준비기획단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는 등 제정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등)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 반 회의”를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 반 회의”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으로”를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유엔 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행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비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한다.

1. 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집행 및 이행 상황 점검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관련한 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 중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준비와”를 “준비·개최와”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시행

안 제10조제1항 중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 단체의”를 “준비기획단의”로 한다.

안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6년 5월 31일”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유엔해양총회등”이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 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1. ----- -----정 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 -----.
2. (생 략)	2. (원안과 같음)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① . ② (생 략)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 ----- -----.
1. · 2. (생 략)	1. · 2. (원안과 같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 ----- ----- -----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
역협회의 회장

4. (생략)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①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행
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
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접
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위
원회에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
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신설>

4. (원안과 같음)

④ -----

-----해양수산부 소
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유엔해양총
회 집행위원회의 장이 임명하
는 사람으로-----.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①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1. 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의 집행 및 이행 상황 점검

<신 설>

<신 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3. (생략)

③ (생략)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관련한 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 집행위원회 -----

-----.

1.~ 3.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① -----
----- 지원하기 -----

-----.

② -----
-----.

1.·2. (원안과 같음)

3. ----- 준비·개최와 -----

의 편성 · 집행

4. ~ 9. (생략)

③ (생략)

제8조(국가 등의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③ · ④ (생략)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4. ~ 9.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8조(국가 등의 지원) ① (원안
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3. (원안과 같음)

4.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숙박 대책 수립·시행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

준비기획단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 ③ (생 략)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 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 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 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 5 월 31일부터</u> 시행한다.	----. ② (원안과 같음)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 ③ (원안과 같음) <u><삭 제></u> 부칙 제1조(시행일) -----<u>공포 후 5 개월이 경과한 날</u>----- ----.
---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6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어기구 · 윤준병 · 문대림
김동아 · 김병주 · 박희승
조인철 · 이개호 · 임미애
전종덕 · 최혁진 · 임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 · 주변공원 · 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

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위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유엔해양총회등의 정의를 실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수정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원 조직인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성격과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 대상을 준비기획단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는 등 제정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등)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엔해양총회등”이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이란 유엔해양총회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질병관리청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①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집행 및 이행 상황 점검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관련한 행정기관 간의 협의 · 조정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기획예산처 · 대통령경호처 · 국무조정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해당 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사람)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민간전문가
- ③ 그 밖의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유엔해양총회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엔해양총회등 기반사업 조성
2. 유엔해양총회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시행
5.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엔해양총회등 계획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기획단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

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유엔해양총회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